

마. 제 6 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p>	<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 및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p> <p>2. 제2조 ①②항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수정이 요구됨</p>

바. 제8조 - 제16조, 제24조, 제30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1. 시설주관기관(자): '보건복지부(장관)'</p>	<p>1. 시설주관기관(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p>2. 그 이유는 첫째, 시설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시설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령으로 하여야 적용, 허가, 감독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음 둘째, 이 법령의 집행과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직 전문인력을 갖춘 부서가 건설·교통부임 셋째, 이법의 시행자 또한 건축관계자 이므로 법의 적용과 해석에도 기존 건축담당 관계자로 일원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3. 제17조 이하부분의 주관부서는 법률구조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주관부서로 두는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됨</p>

사. 제 16 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①항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구조 및 안전관리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서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주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편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p>	<p>①항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구조 및 안전관리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서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편의시설 설치비의 3배에 해당되는 편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축 건물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부담금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의 역할을 할 우려가 높음 2. 부담금이 설치비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부담금납부로 설치의무를 대신할 확률이 매우 높음 3. 시행령상에 설치의 가능여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중앙심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아. 제 18 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령에 첫째,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둘째, 연결 접근로가 확보된 곳에 설치하고 셋째, 적정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히 명시하여야 함

자. 제 25 조

당초계획안	수정 · 보완 요구내용
<p>(이행강제금)</p> <p>①항 시설주관기관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1억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①항 시설주관기관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3 - 5배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1. 이것도 적용대상 단위건물별로 부과되어야 효과적이지 전체 시설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강제 이행금'을 내는것이 대상 전체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효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p>

2. 종합의견

가. 시설 이용자로서 가장 불편을 많이 겪게되는 장애인과 노인등의 기본적인 생활권자체를 보장 하기위한 본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에는 블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무장애 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다. 그러나 시설과 설비만으로 모든 종류의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기술적, 경제적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지원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편의증진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인간적인 배려이기도 하다.

라. 따라서 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반드시 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생활보조인의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공익요원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를 장애인 편의증진 요원으로 일정비율 배정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기타 본 법안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반영해야할 점을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전용보다는 일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즉 일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 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물리적 제한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접근권의 확보 방안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규격을 갖춘 옥외 경사로도 결빙기에는 모든 이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일정 규격의 경사로 확보를 법으로 요청하기보다는 보행장애자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심의를 받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 및 지방자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대안의 적합성 유무를 심의 받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시설이나 미관지구, 상세설계구역내 시설물 등의 일반건축인허가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인,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를 통해 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심의받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합리적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일정한 계단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정해놓은 치수가 그대로 적용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형태가 보행장애자에게 적절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너비와 높이가 안전계단 범주내에서 설계되어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난간의 연속성이 안전에는 더욱 중요하며,

전 시가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도용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자칫 문제 해결을 관료주의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위험한 장애요소마다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사용하기 편리한 승강기가 있다면 구태여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경사로의 유무를 따져 시설미비를 지적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은 안전이 확보된 합리적인 대안이 수치중심의 관료주의적인 해결책보다도 더 존중받고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영역(보행로, 도로, 광장등)과 개인영역(해당인 주거)에 모두 적용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지하철 탑승장은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곳까지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시설 일부에만 이 법이 적용되도록 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분적인 대안은 낭비이며 이용되지않는 전시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여섯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금융지원과 정부의 세금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시설의 설치자가 자연스럽게 법이 요구하는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지원금, 융자알선 등의 지자체 지원과 해당 설비(예 승강기)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보장하면 장애인의 편의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다.

일곱째,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언어와 청각장애자만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장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비장애인도 낯선 외국인과 대화할 때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면 그와 있는 동안은 영락없는 장애인이다. 이때는 흔히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역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쇼핑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나 지방자치 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 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 복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인 공익요원의 배치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써 해당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해당 국가 기관에 매년 공익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배치된 공익요원은 일정기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생활불편자를 선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한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
케 한후 일상생활을 지원케 하면 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 시민·종
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유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관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각종 관계 시설기준령의 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각 시설물을
대상으로 몇몇 지적인 내용들의 개선을 요청해도 미처 발견되지 못했거나 지적하지 않은 문제
점은 그대로 남게 마련이다. 때문에 일시방편에 불과한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종 관계 시설기준령에 장애인 관련 시설기준은 삽입,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
육부에서 제정,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기준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이 모든 일
반학교에서 수학 가능하도록 각종 교육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장애인 특례입학생을 받아들인 대학들이 그들이 내린 용단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고 더 넓
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이 질타
에 앞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목표를 정해주고 달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다.

편의시설 설치 관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모른다.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이
선불리 서두르면 오히려 시행착오로 인한 폐해만 가중될 우려가 더 크다. 따라서 기준령 보완
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단체에서 시설보완에 대한 건축적인 지침을 연구, 제시하기를 제안
한다.

장애인은 특별대우 받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더불어
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노인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그 관
련 법령, 규칙등이 장애인 만을 위한 것이 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
회 공동체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기본법'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토론

김 완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회장)

청각장애인의 접근·이용권 확보를 위한 대안

김 완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대표이사)

1. 법 제정에 따른 입장

장애인은 비록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지만, 인간으로서 천부적 존엄성과 국민으로서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에게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에서조차 차별당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교육과 직업세계의 닫혀진 빗장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편의시설과 각종 정보에 대한 개방에 있을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가정내 주거환경에서부터 공중전화 사용, 지하철, 열차, 항공기, 여객선, 터미널, 은행, 병원, 백화점,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까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보제공이 차단되어 있다.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에서 각 장애영역별 불편사항과 개선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이 법의 제1조 목적에서 밝혔듯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되고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접근권 확보를 위한 대안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는데는 통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며,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보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며 중요하다. 최초의 전기통신인 전신(telegraph)은 모르스 부호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었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한 이래 인류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현재의 정보화 사회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첨단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는 데는 통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있다.

따라서 타장애인에 비해 장애의 부위나 정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은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규칙에 관한 내용들이 비중 있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관련항목에 있어서도 극히 미비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우려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길 바라며 아래에서는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 접근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각장애인용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과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리보다는 문자, 나아가 화상전화 쪽으로 개발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자전화 개발에 비중을 두어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미니텔, TDD를 보급하고, TRS(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 음성을 문자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시켜 건청인과도 불편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전용 공중전화기가 설치되고 있는 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중 Fax, 증폭 전화기의 설치가 공공장소 및 건물, 그리고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 편의시설의 접근, 이용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과 언어의 장애로 오는 시설 이용의 불편은 앞서 설명했듯이 가정의 주거환경으로부터 공중전화 사용, 지하철, 열차, 항공기, 여객선, 터미널, 은행, 병원, 백화점, 관공서 등 많은 사람이 움집하여 있는 이용시설의 경우 더욱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장소, 시설에 디지털식 시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회·문화적 접근, 이용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생활에서도 청각장애인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연극이나 영화는 그저 움직임을 보고 적당히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TV에 자막이나 수화가 없으면 청각장애인에게는 눈요기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TV나 각종 공연물에는 청각장애인들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각종 편의용품 및 기기의 이용권 확보가 시급하다.

청각장애인들은 옆방에서 불이 나도 잘 알지 못하며, 독서를 하고 있다가도 변을 당할 우려가 큰 사람들이다. 또한 아기 양육시 울음을 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기울음 감지기, 초인종, 착신램프, 진동식 알람시계, 전화벨,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의 편의생활용품 및 기기의 배치와 설치보급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5) 청각장애인(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면, 위험상황 발생시(화재,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공습경보, 기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근래에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대책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시각적인 상황 발생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6)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국가가 운영하는 관공서(시·군·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와 공공기관(은

<표 1. 미국의 복지 통신기기>

대상	기기	개 요
청각	난청자용 전화기	최대 증폭량 25dB, 손잡이 부분에 음량 볼륨 조절 손잡이 부착
	난청자용 공중전화기	2단 증폭, 손잡이 부분 스위치를 동작시키고 있는 동안 증폭
	난청자용 헤드셋	풀러그 케이스에 증폭기를 내장
	골도 전화기	골도에 의해 수화가 가능한 헤드밴드식 전화기
	독순용 수화기	농아를 위해 수화를 대행하고 내용에 따라 입술을 움직인다.
	보청기용 어댑터	보청기에 의한 공중전화기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휴대용 어댑터
	각종 증설 벨	벨 차임, 톤링거, 대형 공, 플라스틱 공 등
	착신표시 램프	착신을 램프로 표시
	착신표시용 스위치	착신 전등을 점멸, 선평기의 기동 등으로 알림(시그널 콘트롤)
음성	약성자용 전화기	송화 증폭기 내장, 손잡이 부분에 음량 조절볼륨 부착
	전자 목청	휴대용 인공발성기, 후두부에 대고 사용한다.
청각 음성 언어	촉각·시각통신장치	모르스 부호를 음, 빛, 진동 등에 의해 감지하는 장치
	데이터폰 서비스	텔레타이프, 팩시밀리, 텔레라이팅 등에 의해 통화한다.
	텔레텍 서비스	가입전신 시스템을 완전 농아가 이용한다.
시각	맹인용버튼 전화부가용품	콘트롤키 부착 부가용 수화음으로 화중회선을 안다
	맹인용 중계대 부가용품	광프로브를 사용하여 음으로 회선을 선택한다.
사지	카드 다이얼러	카드로 발신하는 오토 다이얼
	스피커폰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으로 통화한다.
	트립라인 폰	헤드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전화기
	터치톤 서비스	회전형 다이얼은 조작할 수 없지만, 버튼은 누를 수 있는 장애인용
	각종 헤드셋	경량 헤드셋, 헤드밴드를 벗기면 경향 헤드셋이 된다.

<표 2. 영국의 복지 통신기기>

대상	기기	개요
청각	난청자용 전화기	수화구 옆에 음량조절 볼륨이 있다.
	소형 수화기	보청기를 대고 이용, 또는 독순용으로 이용
	트림폰	독특한 착신 표시음으로 보통의 벨소리보다 듣기 쉽다.
	각종 증설 벨	전화벨, 진동벨, 부저벨
	착신표시 램프	핸드셋 뒷면에 램프를 넣어 전화기와 별개로 되어 있다.
음성	양성자용 전화기	전화기와 별도의 셋트의 송화 증폭기, 셋트의 스위치를 넣으면 동작
시각	신형 다이얼	시력이 약한 사람도 고려한 새로운 표준 다이얼
사지	센더	원터치 오토 다이얼로 국의 교환수를 호출하여 접속을 의뢰한다. 스피커폰과 조합되 것도 있다.
	스피커폰	핸드프리형, 방수형도 있다.

<표 3. 일본의 복지 통신기기>

대상	기기	개요
청각	난청자용 전화기	수화 음량을 최대 25dB 증폭하는 수화 증폭기를 내장하는 난청자용 전화기
	섬광식 착신전화기	16Hz의 호출신호에 따라 3초마다 프레쉬 램프를 섬광시켜 착신을 알리는 가시식의 착신표시기
	저주파 전령	난청자용 전화기에 의해 수화는 가능하지만, 벨 인식이 어려운 난청자에게 낮은 주파수(300Hz, 500Hz 등)의 음을 식별할 수 있는 난청자용 부속전령
시각	맹인용 다이얼판	다이얼 숫자 3, 6, 9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사상의 돌기를 갖는 원형의 다이얼판으로서 다이얼의 가드링의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
	맹인용 증계대	돌출 표시기의 동작주기 및 가청신호의 종류에 의해 국선이나 내선 등의 상황을 촉각 및 청각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증계대
노인	노인복지 대책용 전화장치	혼자사는 노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로서 긴급 메시지의 자동송출, 자동 다이얼, 수화음량 증폭(약 10dB)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청각장애인 정보통신 관련제도

원격 의사소통(통신)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잘 배려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미국의 장애인법이나 통신법 등에 통신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여타 장애인들보다)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화시대'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사회가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난청인들도 음성전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각종 부가장치와 특수한 음성전화기(골도전화기)의 개발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자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장치(TDD)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청각장애 인용 통신기기(TDD)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건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중계서비스(TRS)를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난청인들에게는 각종 부가장치를 통한 음성전화에의 접근을, 청각장애인(농아인)들에게는 TDD와 TRS를 통한 문자통신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청각장애인의 통신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법률 및 유럽 국가들의 시책

<표 4. 청각장애인의 통신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법률>

단말기 제조업체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청기 호환법(Hearings Aid Compatibility Act,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화기(국내 제조/해외 수입)의 보청기 호환성 의무화 ◦ 개정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 제25조 <장애인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기 제조업자, 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기기, 서비스의 설계, 개발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기존 특수기기와 호환되도록 할 것을 규정 -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는 FCC와 협력하여 통신기기의 '접근성 지침(accessibility guideline)' 제정 및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 제25조 <장애인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간 통신 사업자(유선, 무선)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 통신중계서비스는 24시간 운용되고, 그 요금은 전화요금보다 비싸지 않도록 함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TV방송물은 음성내용의 폐쇄자막화 의무화
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되는 모든 전화는 보청기 호환성을 갖추도록 규정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업(15인 이상)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화 : TTY 등 특수전화 설치, 제공 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상점, 식당, 호텔 등)의 특수전화기(TDD)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표 5. 유럽 국가들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통신 시책>

국가	시책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이 따로 부착된 미니텔(Minitel Dialogue) 30,000회선 보급 ◦ 청각장애인의 수신장치로서 깜박이 등을 무료로 설치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0대의 청각장애인용 규격 전화기 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중계서비스(문자통역) ◦ 작은 스크린이 부착된 키보드 가격의 70%를 정부에서 부담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대의 문자전화기 보급 ◦ 청각장애인 중계소 4군데 설치 운영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수입에 따라 키보드 가격 60~80%를 정부가 부담 ◦ 청각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중계서비스(문자통역)

토론

신동열

(시각장애인복지회복지관 관장)

검토 의견

신동렬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복지관 관장)

1. 서언

1) 대부분 건강한 젊은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생활공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어 온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노인 등의 영구적 이동약자와 임산부·어린이·환자 등의 일시적 이동약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모든 이동약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2) 이 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를 처벌함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의 존재 여부만을 따져 합격·불합격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불합격 시설에도 여하히 끝까지 이용가능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조항별 검토

1) 제목

장애인과 노인은 앞으로 장애 상태가 회복될 수 없는 반면 임산부는 일시적 장애상태인 만큼 임산부를 제목에 포함시킨다면 임산부와 똑같이 일시적 장애상태에 있는 어린이와 환자도

포함되어야 옳다. 따라서 임산부·어린이·환자 등은 “장애인 등”의 용어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제목에는 장애인과 노인만 포함시켜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좋다.

2) 제 1조 (목적)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②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를 삭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공공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긴 하지만 편의시설이 있어도 혼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중복장애인이나 신체의 균형을 잡기 힘든 사람은 그것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

또 구조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대상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법의 목적은 끝까지 대상시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적당히 벌금을 부과시키고 끝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라는 말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는 구조물에 모든 장애인과 노인 등을 다 맡겨버린다는 의미로 통하기 쉽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입구에 장애인용 비상호출 인터폰의 설치나 비상 대기조의 편성,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의 상시 배치 등의 편의시설 보조조직 구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봉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제 4조 (접근권)에서도 두번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

② 시설 및 설비는 제 7조에서 말하는 대상시설을 말함인지 계단이나 화장실같은 대상시설의 일부를 말함인지 분명치 않다. 문맥상으로 볼 때 후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 혼선이 온다. 이 법의 목적은 제 7조에서 언급하는 대상시설, 즉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지 계단이나 화장실같은 부분적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지 않다. 시설 및 설비, 즉 계단이나 화장실은 대상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목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물이 도로가 아니라 육교나 지하도라면 우리 나라의 모든 육교와 지하도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램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용의 목적물이 도로라고 하는 대상시설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육교나 지하도에는 휠체어 사용자는 전방 몇미터 지점의 횡단보를 이용하라는 표지판만으로 대상시설의 이용 즉 도로횡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1조 (목적)의 “시설 및 설비”는 “대상시설”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 (접근권), 제 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도 똑같이 이용의 목적물을 “시설 및 설비”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같은 이유때문에 “대상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3) 제2조 (정의)

① 제 1항에서 “장애인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임산부와 똑같이 한시적 장애상태인 환자·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장애인·노인·임산부·환자·어린이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제 2항에서 “편의시설”의 정의를 “시설과 설비”라는 하드웨어적 구조물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시설과 설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들”로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에는 비상 인터폰과 인력의 연결 등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동불편의 문제를 편의시설에만 떠맡기고, 가능한 다른 조치들을 배제해 버리면 적당한 벌금으로 면죄부를 받는 시설과 시설주가 늘어나고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의 불편속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4) 제 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②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① 본 조항에서는 제 1조, 제 4조 및 제 6조에서 이용의 목적물을 “시설 및 설비”로 한 것

과는 달리 제 7조에서 언급한 대상시설 중의 하나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역시 대상시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똑같이 “대상시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② 또한 “가능한 최단거리로”라는 거리상의 단축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기에 시간적인 단축도 기한다는 뜻에서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짧은 시간내에”로 수정했으면 한다.

5) 제 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 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이 법을 원활히 집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공급기관의 설립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편의시설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사전 검토와 준공심사, 제 15조 (적용의 완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설치 불가능 건축물에 대한 응용적 필요조치의 추천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제 16조 (편의시설 부담금)

제 1항 “.....1억원 이하의 편의시설 부담금을 부과한다.”를 “.....편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보조할 수 있는 부수적 조치들을 시달해야 한다.”로 고쳐서 부담금의 납부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라도 필요하면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7) 제 17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 1항과 제 2항의 “.....휠체어·점역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에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 구체적인 비치물품의 명칭보다 하위 법에서 어떤 물품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구와 촉각 또는 청각 안내도구 등을 비치하여.....”로 바꾸는 것이 좋다.

3. 제언

1) 본 법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가칭 편의시설 연구개발센터를 법의 시행 일 이전에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센터 내에 장애인계와 학계에서 실무를 쌓은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설주관기관을 전문적으로 보좌하지 않으면 또다시 엄청난 시행착오 속에 빠질 우려가 크다.

2) 편의시설의 설치도면은 늦더라도 반드시 가칭 편의시설 연구개발센터의 검토를 마친 후에 시공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시공자들이 미리 만들어놓고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를 더 들여 고치더라도 이용상 비효율적인 시설이 되기 쉽다.

3) 본 법에서 의미하는 편의시설은 조항별 검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 그대로 하드웨어적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편의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 조치들까지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규격을 완화한 조치로서도 휠체어 리프트나 기타 하드웨어적 편의시설로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이 있을 때 방법이 없다하여 벌금을 부과해 버리면 그 건물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하위법에서 제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범위의 확대 해석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실제로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표지 마크를 부착했다 해서 버젓이 주차를 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지 마크 외에 “장애인 이용중” 표지판을 또하나 발부하여 차를 떠날 때 유리창에 걸어놓고 떠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 차마 장애인이 아닌 대리 운전자가 자신의 용무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장애인 이용중”의 표지판을 걸어두지는 못할 것 아닌가.

일본의 경우는 “주정차금지 해제차량”이라는 표지판에 대각선으로 두줄의 붉은 선을 그어 관

인을 찍어 발부하고 주정차가 금지된 노상에서도 적당한 장소에 세우고 이 표지판을 걸어 놓으면 주정차가 가능하다.

토론

설재훈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행령, 시행규칙의 방향

설재훈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본인이 오늘 포럼에서 소개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느낀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내용이 제목에 못미침

먼저 느끼는 점은 법률제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관련 각종정보접근 등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증진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목에 걸맞게 법률내용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뿐만이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증진, 생활관련 각종정보접근의 편의증진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편의증진과 관련한 내용보완이 필요함

장애인등의 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편의증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뿐만 아니라

- 이동 및 여행 편의와 관련해 필요한 각종정보제공
-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포함)
- 자력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수송 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의 트립스코우프(Tripscope)

정부가 운영비용을 보조하는 장애인 여행안내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집출발로부터 목적지도착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를 보장함

◦ 프랑스의 동반여행서비스(Accompanied Journey Service)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및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파리대중교통공사(RATP)가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장애인이 전화로 대중교통공사에 여행하고자 하는 일시, 출발지, 도착지, 장애의 종류 등을 알려주면 직원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애인을 동반하여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

◦ 일본의 핸디캡 수송서비스

핸디캡(Handicap)이라 불리는 리프트가 달린 차량(휠체어 1~2대를 실을 수 있는 7인승, 또는 휠체어 1대를 실을 수 있는 4인승 미니캡의 두 종류)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자택에서 목적지까지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보장제도

※ 경기도 부천시가 '96. 9월부터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리프트와 함께 휠체어 7석을 마련하여 무료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버스가 우리나라에서 특별수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임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 대한 교통대책은

① 기존의 공공건물, 교통시설물 등에 각종편의시설을 갖추어 최대한 접근가능(Accessible)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현재 제시된 법률안의 주내용임)

② 자력 이동이 불편한 경우를 위해 지원수단으로서 여행안내 서비스, 동반여행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③ 도저히 기존시설로는 수송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Door-to- Door 특별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법률의 내용도 이러한 체계적인 편의보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의 방향

동법률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7조 대상시설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대상시설을 “신축시설”과 “기존시설”로 나누어

① 신축시설에 대하여는 중·소규모 시설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을 뜯어고쳐야 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대상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사사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건축물 건축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할 때 법에 정한 규모이상의 신축건물은 모두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기존건물은 기존면적의 15%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만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대상시설을 지역별 및 종류별로 건축연면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음

(2) 법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관련

위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역시 “신축시설”과 “기존시설”로 나누어

① 신축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든 편의시설을 규정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②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을 보완하되 시설개축의 한계를 감안하여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례

기존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변기 등의 편의시설은 비교적 손쉽게 개축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경사로 등의 시설은 건물구조상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3) 법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은 이미 건축되어 사용중인 기존시설을 비용을 들여 개축하는 어려운 일에 힘쓰기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시설물에 편의시설이 완벽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완공후 사후시정보다는 설계단계에서 사전시정이 보다 중요하므로,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은 처음 설계때부터 다음과 같이 시설의 종류별로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 설계심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를 철저히 실시
-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건축시설 : 건축심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를 철저히 실시

이를 위해 설계심의 및 건축심의회 기존의 구조심의, 에너지심의, 미관심의 등에 덧붙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법제11조 실태조사 관련

시설주관기관이 실시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장애인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법제16조 편의시설 부담금 관련

대상시설의 구조 및 안전관리상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차후에 건축물을 뜯어 고치도록 하는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좋더라도 새로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구조 및 안전관리상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편의시설 부담금의 부과를 최소화하여 시설주(특히 민간시설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RIDRIK)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02)521-5364 전송 (02) 584-7701